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78097 저작권사용료지급
원 고 사단법인 ○○
서울 강서구 ○○
대표자 이사 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황재선, 박석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 고 주식회사 ○○ (합병 전 상호 : 주식회사 ○○프리텔)
성남시 분당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김지현, 안길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임석, 김용호, 반소정

변 론 종 결 2010. 3. 19.
판 결 선 고 201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4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주식회사 ○○프리텔(2009. 6. 2. 피고와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은 무선이동통신사업자이다.

나.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시행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2. 3.경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상용화하였는데, 통화연결음 서비스란 위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시간 동안에 위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신자에게 들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피고는 2002. 12.경부터 ○○(○○)라는 명칭의 통화연결음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가입자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방법

피고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클래식 음악 등 저작권과 관

련없는 통화연결음이 전송되고, 이후 가입자는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선 응용 프로토콜(WAP)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여 이를 통화연결음으로 전송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는 매달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 유선은 1,2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다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1988. 2. 23. 제정되었고, 2002. 6. 1.부터 2009. 10. 13.까지 아래 표와 같이 8차례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 조항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2009. 10. 13. 개정된 규정(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2008. 2. 28. 개정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다. 이하 위 개정 이후의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 중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98%이다.

개정일	2002. 6. 1. 2003. 6. 27. 2003. 10. 16. 2005. 10. 24.	2006. 7. 14. 2007. 7. 19.	2008. 2. 28. 2009. 10. 13.
내용	제22조(이후 제24조, 제25조로 변경되었다.)(무선 인터넷 부가 서비스의 전송사용료) WAP/SMS/ME 방식 등 무선인터넷으로 음악정보를 이용할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총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총 매출액이란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 이용자에게 청구한 음악정보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을 말한다.	제25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매출액이란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	제4장 전송 사용료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사용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50원 × 가입자 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매출액 × 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p>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p>	<p>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p> <p>제25조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p>
--	--	---	--

마. 이 사건 서비스 관련 당사자들

1)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들은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전송하는 데 적합하도록 음원을 편집, 가공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제공된 음원은 피고의 서버에 복제·저장된다.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는 마스터 콘텐츠제공업자(Master Contents Provider, 이하 'MCP'라 한다.)의 플랫폼을 통하여 음원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선택된 음원은 피고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발신자에게 전송된다.

2) 2006. 11. 이전까지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은 원고와 MCP 사이에 체결하였는데 MCP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피고로 하여금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 12. 이후부터 2008. 12.까지 위와 같은 계약은 피고의 저작권 관련 분쟁 등을 전담하는

마스터라이선스공급자(Master License Provider, 이하 'MLP'라 한다.)와 원고가 체결하였다.

3) 2008. 12.까지 위 각 계약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는 당시 시행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매출액에는 정보 이용료만 포함되었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는 MCP 또는 MLP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MCP 또는 MLP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가입자가 음원을 선택할 시점에 1회 납부되는 정보 이용료는 저작자인 작곡가 및 작사가에게 9%, 실연자에게 4.5%, 음원의 제작자에게 25%, CP에게 19%, MLP에게 5%, MCP에게 9.5%, 피고에게 28%의 각 비율로 정산하여 분배되었고, 매달 납부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러한 분배 없이 피고가 전부를 차지하였다.

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1) 원고는 2008. 7.경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에 원고가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고, 2008. 9.경 피고에게 저작권 관리의 일원화를 요구하면서 MLP와 체결하였던 저작물 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2.경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피고, 피고의 MLP인 주식회사 ○○에프뮤직은 2009. 4.경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의 체결을 일원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즉, 2009. 1.부터는 이 사건 규정 제 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사용 계약을 원고와

위 MLP 사이에 체결하며, 피고는 위 사용료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규정 제25조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11.경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할 때 발생하는 수입은 그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매출액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사.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피고가 2009. 3. 한 달간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22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2, 5, 11 내지 13, 16, 17,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하이텔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규정 제23조 제1항 비고2는 매출액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매출액 정의'라 한다.), 이는 제25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바, 위 매출액이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그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의미하므로, 가입자가 1회 납부하는 정보 이용료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위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로 정보 이용료에 대하여만 분배비율(9%)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09. 3. 한 달간 부가서비스 이용료 22억 원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따라 정산한 194,040,000원(= 부가서비스 이용료 2,200,000,000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한 수입만을 의미하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이용료는 가입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개별 저작물을 인프라(Infra) 및 MCP 플랫폼을 통하여 선택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대가인데 반해,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개별 음원 사용 등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위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가입자는 개별 음원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가서비스의 가입만으로도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가입자가 개별 음원을 선택하는 것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환기에 통화연결음 전송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관리하는 등 인적, 물적 설비를 투입하였으며, 서비스 관리 및 마케팅, 부가서비스 유치 확보를 위한 판매망 구축 및 관리, 신규 사용 증대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다.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한 대가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이 신규 시스템의 구성·유지가 필요한 서비스 및

네트워크에 부담을 지우는 서비스의 경우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부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거나 그 부담이 미약한 경우에는 무료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개인이 음원을 다운로드받아 완전히 소유하는 경우 등에 비추어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 이용료가 저작물의 전송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서비스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분배를 하기 위한 것이다.

⑤ 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에 관계된 것으로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제25조에까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의는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과 관련한 매출액만을 저작물 이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은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시행할 때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 이용료를 징수하는 비용 구조를 설계한 후, 당시 정보통신부에 관련 약관까지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아 위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요금체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정보 이용료만을 저작권 사용의 대가에 대한 정산 기준인 매출액으로 보았다. 이후 징수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위 징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매출액의 범위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CP, MLP,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원고의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거쳐야 하는데, 위 절차가 모두 이행되지 않

았다.

3) 이 사건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부터 원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기 시작한 2008. 7.경까지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물 사용계약은 당시 시행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었다. 위 징수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제정·개정하고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여 적용하여 온 원고의 의사 및 계약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 이용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서비스의 비용 구조에 대해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계약에서 정보 이용료만을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으로 보아 왔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하였거나 위 조문의 해석에 대한 원고의 의사는 정보 이용료만을 정산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규정 제25조는 벨소리와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이용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개개의 음원에 대하여 1회적으로 납부한 요금을 매출액으로 상정하고 있고, 저작권법상 특정 음원에 대한 전송 사용료는 거래관행상으로도 1회의 일시불 형태의 요금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5) 다른 나라에서도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관련자들에 대한 분배 없이 단독으로 수취하는 월정액이 존재하고, 콘텐츠에 대한 요금은 이와 별도로 징수하여 이에 대하여서만 저작권자 등 콘텐츠 관련자들 사이에 분배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음원 사용과 관련된 권리자는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CP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분배할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여야만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정보 이용료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의 정의

2006. 7. 14.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을 '이동통신회사에서 매월 정보 이용자에게 청구한 음악정보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매출액을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8. 2. 28.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23조 제1항 비고2(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매출액을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1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8. 2. 28.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당시 원고의 개정 신청안에 대하여, 개정 신청안 '제4장 전송 사용료' 중 제24조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의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와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24조의 2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의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는 신청안을 삭제하는 대신 위 신청안 제23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제1항의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는 부분을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후 그 말미에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내용을 부가하여 이 사건 매출액 정의와 같이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매출액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포함 여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6. 7. 14. 개정 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매출액의 정의를 '매월 정보 이용자에게 청구한 음악정보료 중 당월 징수한 총액'으로 정하여 그 문언상 정보 이용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 위 개정을 거치면서 위 규정은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으로 변경되어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경위와 이 사건 매출액 정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도 위와 같이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 등과 관련된 개별 음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에게

정보 이용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매출액 정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 수익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음악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 수입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④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정보 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전부를 저작물 이용 대가에 대한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체 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수익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 수익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수익을 제외하여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고 스스로도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모두 음성통화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는 관계로 개개의 사업 및 서비스 별로 구체적 비용 투입 및 수입 내역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 이용료를 징수하는 비용 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⑥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모두 피고의 수익으로 하여 왔고, 개별 음원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자들은 정보 이용료만을 분배의 대상으로 삼아온 기존의 관행이 존재하였

는데, 원고는 2009. 1. 이전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MCP, MLP 등과 저작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온 이상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2009. 3. 부가서비스 이용료 22억 원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따라 정산한 194,040,000원(= 부가서비스 이용료 2,200,000,000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스템에 대한 대가와 개별 목적물에 대한 대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입자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능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원고가 관리하는 개별 음원이 전송 등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과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정에 대한 주장

2006. 7. 14. 개정 전까지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정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액은 정보 이용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개정을 통하여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하이텔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

정의 개정 단계에서 CP, MLP,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원고의 음악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승인신청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게시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CP, MLP, 피고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징수규정 해석 기준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09. 1. 전까지는 피고와 MCP, MLP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 사건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확정적인 의사로 정보 이용료만이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 피고, 피고의 MLP는 2009. 1.부터는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25조의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1회적으로 납부한 요금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서비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벨소리와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한 1회성 다운로드 서비스와는 성질상 차이가 있고, 이 사건 규정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광고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이를 매출액으로 보고 원고에게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액 정의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5) 나머지 주장

나아가 피고는 해외의 경우에 비추어 보거나, 이 사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 제25조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수적인 정황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수 _____

 판사 김혜선 _____

 판사 최환영 _____